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6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증명 서류 등의 제출(임광현의원안)	2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66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11.

(3) 회 부 일 : 2024. 10.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과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공제가 아닌 자녀에게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증명서류 등의 제출(임광현의원안)

현행	정부안
☐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 최대 한도: Min(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30억원) - 최소 한도: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더라도 공제 ○ <신설>	☐ 배우자 상속공제 시 증명서류의 제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u>

* 임광현의원안 2024. 10. 11. 발의(의안번호 4669)

☐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높은 공제한도를 악용하여 세금부담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자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

액에서 30억원 혹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다른 공제한도보다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높은 공제한도를 악용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아니함에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하여 자녀에게 과세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¹⁾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명하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공제²⁾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납세자의 증명이 필요함.

1)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text{한도금액} = (A - B + C) \times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등 인적공제의 경우 해당 공제액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착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이 배우자에게 귀착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서식³⁾으로 안내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관리번호	-
------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①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중 략)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⑮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④와 ⑭ 중 적은금액)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둘째, 개정안은 이와 같이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근거하여 제출받고 있는 입증서류 제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음.

2. 30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현행법⁴⁾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이 있지만, 개별 공제에 관한 규정⁵⁾(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에도 추가적으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고, 각 공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선상에서 배우자공제에 대하여도 개정안과 같이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에도 납세자의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신고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가업상속)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영농상속) ⑪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61